



산안법 31조에 의거 관리감독자교육의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산 관련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 알고 있습니다만 업종이 유통업인 경우 생산과는 무관한지, 그리고 만약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어느 부서의 어느 직급까지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관리감독자 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를 말합니다.

따라서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부서란 당해 부서의 업무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고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 교육 해당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이면 직급 명칭과는 관계없이 관리감독자 교육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현장은 발주처와 계약금액은 750억 정도이나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은 870억 정도 됩니다. 이럴 경우 총공사금액은 관급자재비 포함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그렇게 되면 안전관리자가 2인 이상 선임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서상의 안전관리비는 8억2천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했을 경우 11억 정도가 됩니다. 그럴때 어떤 금액을 현장 안전관리비로 책정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 총공사금액의 범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1-22호, 2001.2.16) 제4조에 의거 발주자가 제공한 “관급자재비”는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며, 동 금액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의 수를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두 번째 질문인 안전관리비대상액 구분은 동 고시 제5조에 안전관리비는 발주자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상된(고시 별표1) 금액으로 하며,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선정하는 것은 도급계약서 내역서상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는 용역회사의 직원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사업중에서 도축업무를 도급계약으로 운영코자 하나, 상기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광범위하게 표기되어 있어 좀 더 확실히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 26개의 업무에만 근로자파견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도축업무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닙니다.
2. 26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의 범위 및 직업정의에 대해서는, 통계청 사이트 (www.NSO.go.kr > 통계표준분류 > 표준직업분류) 구분류(1992.12.10고시)를 접속하여 왼쪽에서 대분류를 선택후 오른쪽에서 해당 직업분류코드번호를 선택하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3. 상기 방법으로 파견대상업무의 범위 및 직업정의를 참고하시어 파견대상이 아닌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파견대상업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경우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는 경고,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도급사업의 경우 대상업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노동부고시 제98-32호」에 의해 도급사업과 파견사업을 구별하여 위장도급 등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관공서에서 발주를 받은 공사에 참여하는 회사의 안전관리자로 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안전보조원을 채용근무를 시켰으나 본인의 실수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매월 정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당 현장의 현재 공정율은 68%입니다. 지금이라도 누락분에 대하여 소급정리를 할 수 있는지요.



1.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2. 동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안전시설비, 보호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 및 행사비, 근로자건강진단비,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본사 사용비등에 국한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따른 인력의 인건비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에 의거 적법하게 사용된 것이라면 당연히 지급대상이 된다고 사료되며 실제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그 이후에라도 정산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